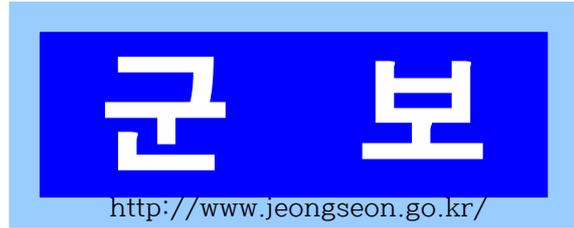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25호 2017. 9.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7-140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17-144호 예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7-904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25
- 정선군 공고 제2017-907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36
- 정선군 공고 제2017-909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43
- 정선군 공고 제2017-912호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50
- 정선군 공고 제2017-921호 「정선군민제안조례」를 폐지.....65
- 정선군 공고 제2017-922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전부를 개정.....6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7-140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공원조성계획이 기 수립된 증산공원(어린이공원) 및 조동 제3공원(체육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설치를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58번지 및 신동읍 조동리 240번지 일원

다. 면 적 : 증산공원 : 13,181㎡(변경 없음), 조동제3공원 : 26,900㎡(변경 없음)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증산공원	어린이 공원	남면 무릉리 819-58 일원	13,181	-	13,181	건고 제194호 (76.12.7)	
기정	③	조동 제3공원	체육 공원	신동읍 조동리 240 일원	26,900	-	26,900	강고 제78호 (2002.04.08)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증산공원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181	-	13,181	100.0	
공원시설	6,685	증) 32	6,717	51.0	
녹 지	6,496	감) 32	6,464	49.0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구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	건축규모(바닥면적)(m ²)			건축규모(연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181	-	13,181	100.0	83	증)32	115	83	증)32	115	시설율: 51.0%
공원시설 소계	6,685	증)32	6,717	51.0	83	증)32	115	83	증)32	115	
기반시설	1,676	-	1,676	12.7	-	-	-	-	-	-	
조경시설	786	-	786	6.0	-	-	-	-	-	-	잔디마당
휴양시설	1,113	-	1,113	8.4	-	-	-	-	-	-	휴게소, 야외피크닉장
유희시설	1,183	-	1,183	9.0	-	-	-	-	-	-	생태놀이터, 옛추억놀이터
운동시설	1,651	-	1,651	12.5	-	-	-	-	-	-	족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276	-	276	2.1	83	-	83	83	-	83	음수대, 관리소, 화장실
공원 관리시설	-	증)32	32	0.3	-	증)32	32	-	증)32	32	관리사무소
녹지 및 기타	6,496	감)32	6,464	49.0	-	-	-	-	-	-	

(다) 공원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	건축규모(바닥면적)(m ²)			건축규모(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181	-	13,181	100.0	83	증)32	115	83	증)32	115	
기반 시설	소 계	1,676	-	1,676	12.7	-	-	-	-	-	
	도로	1,270	-	1,270	9.6	-	-	-	-	-	
	광장	406	-	406	3.1	-	-	-	-	-	
조경 시설	잔디마당	786	-	786	6.0	-	-	-	-	-	원형의자,등의자
휴양 시설	소 계	1,113	-	1,113	8.4	-	-	-	-	-	
	휴게소	236	-	236	1.8	-	-	-	-	-	휴게소,등의자
	야외피크닉장	877	-	877	6.6	-	-	-	-	-	테이블,파고라,원형의 자,등의자
유희 시설	소 계	1,183	-	1,183	9.0	-	-	-	-	-	
	생태놀이터	820	-	820	6.2	-	-	-	-	-	모래놀이터,외나무다 리,언덕놀이터,등의자
	옛추억놀이터	363	-	363	2.8	-	-	-	-	-	놀이기구,등의자
운동 시설	소 계	1,651	-	1,651	12.5	-	-	-	-	-	
	족구장	637	-	637	4.8	-	-	-	-	-	농구대
	농구장	454	-	454	3.4	-	-	-	-	-	
	체력단련시설	560	-	560	4.3	-	-	-	-	-	운동기구
편익 시설	소 계	276	-	276	2.1	83	-	83	83	-	83
	음수대	18	-	18	0.1	-	-	-	-	-	-
	관리소,화장실	258	-	258	2.0	83	-	83	83	-	83
공원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	증)32	32	0.3	-	증)32	32	-	증)32	32
녹지 및 기타	녹지	6,496	감)32	6,464	49.0	-	-	-	-	-	-

2) 조동제3공원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900	-	26,900	100.0	
공원시설	12,132	-	12,132	46.5	
녹 지	14,768	-	14,768	53.5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구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건축규모(바닥면적)(m ²)			건축규모(연면적)(m ²)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900	-	26,900	100.0	272	-	272	272	-	272	시설율: 46.5%
공원시설 소계	12,132	-	12,132	45.1	272	-	272	272	-	272	
기반시설	1,097	-	1,097	4.1	-	-	-	-	-	-	
휴양시설	586	-	586	2.2	-	-	-	-	-	-	
유희시설	574	-	574	2.1	-	-	-	-	-	-	
운동시설	7,488	-	7,488	27.8	272	-	272	272	-	272	관리소, 화장실
편익시설	2,387	-	2,387	8.9	-	-	-	-	-	-	정자, 운동기구 (신설)
녹지 및 기타	14,768	-	14,768	54.9	-	-	-	-	-	-	

(다) 공원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규모(바닥면적)(㎡)			건축규모(연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6,900	-	26,900	100.0	272	-	272	272	-	272	
기반 시설	소 계		1,097	-	1,097	4.1	-	-	-	-	-	-	
		도로	1,097	-	1,097	4.1	-	-	-	-	-	-	
휴양 시설	소 계		586	-	586	2.2	-	-	-	-	-	-	
	가	쉼터	586	-	586	2.2	-	-	-	-	-	-	
유희 시설	소 계		574	-	574	2.1	-	-	-	-	-	-	
	나	어린이놀이터	574	-	574	2.1	-	-	-	-	-	-	
운동 시설	소 계		7,488	-	7,488	27.8	272	-	272	272	-	272	
	다	공도장	6,055	-	6,055	22.5	272	-	272	272	-	272	
	다-1		680	-	680	2.5	-	-	-	-	-	-	
	다-2		2,162	-	2,162	8.0	-	-	-	-	-	-	
	다-3		3,213	-	3,213	11.9	272	-	272	272	-	272	관리소, 화장실
	라	다목적운동장	1,188	-	1,188	4.4	-	-	-	-	-	-	
	마	체력단련장	245	-	245	0.9	-	-	-	-	-	-	
편익 시설	소 계		2,387	-	2,387	8.9	-	-	-	-	-	-	
	바	주차장	2,387	-	2,387	8.9	-	-	-	-	-	-	정자, 운동기구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14,768	-	14,768	54.9	-	-	-	-	-	-	
	하 천		379	-	379	1.4	-	-	-	-	-	-	
	녹 지		14,389	-	14,389	53.5	-	-	-	-	-	-	

(라) 도로 결정(변경)(변경 없음)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76	1,097				
소 로	3	1	4.0	271	1,078	진입로	지구계	녹지	
소 로	3	2	4.0	5	19	연결로	소로3-1	가. 쉼터	

바.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없음) : 실음생략

사. 공원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군 고시 제2017-144호

예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2-52(2012.05.31)호로 지정(변경)고시된 예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5일

정 선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단지종류 : 지역특화단지
- 명 칭 :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면 적 : 107,260.8m²

2. 산업단지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적기공급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정선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정선군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0.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 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기타 제품 제조업(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대분류	중분류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5,634.4	감)2,440.0	73,194.4	100.0
음식료업	C.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25,066.7	감)4,880.3	20,186.4	27.6
지역특화업	C.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기타 제품 제조업(33)	31,589.0	증)2,440.3	34,029.3	46.4
기타제조업	C.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33)	12,629.6	-	12,629.6	17.3
물류 유통시설	H. 운수 및 창고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6,349.1	-	6,349.1	8.7

6. 용도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7,260.8	-	107,260.8	100.0	
계획관리지역	107,260.8	-	107,260.8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7,260.8	-	107,260.8	100.0	
◦ 산업시설용지	75,634.4	감)2,440.0	73,194.4	68.2	17개 블록
◦ 공공시설용지	26,215.2	-	26,215.2	24.5	
- 도로	15,179.9	-	15,179.9	14.2	3개노선(1,116m)
- 소공원	2,246.7	-	2,246.7	2.1	
- 완충녹지(구거)	8,788.6	-	8,788.6	8.2	
◦ 지원시설용지	5,411.2	증)2,440.0	7,851.2	7.3	2개 블록
- 공동이용시설	2,053.6	증)2,440.0	4,493.6	4.2	관리사, 휴게시설, 위락시설
- 주차장	651.0	-	651.0	0.6	
- 폐수처리장	1,067.0	-	1,067.0	1.0	
- 저류지	1,639.6	-	1,639.6	1.5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합계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종로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1	15	집산도로	155	899	900	일반도로			2,969.3㎡
기정	종로	3	1	12	국지도로	484	900	900	일반도로			6,176.2㎡
기정	종로	3	2	12	국지도로	477	901	900	일반도로			6,034.4㎡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노외주차장	1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651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소공원	1	신동읍 예미리 895-3번지	2,246.7

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완충녹지	1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711	
기정	완충녹지	2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87.5	
기정	완충녹지	3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3,890.1	

5)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저류시설	1	신동읍 천포리 499-2번지 신동읍 예미리 896-5번지	1,639.6	

6)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폐수종말 처리시설	1	신동읍 예미리 896-4번지 신동읍 천포리 499-1번지	1,067	

7)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상수도

구 분	용수량(㎡/일)	상수 공급계획	비 고
계	750	-	
공업용수	716	지방상수도(조동정수장 : 시설용량 3,300㎡/일)시설 계통을 통해 공급	
생활용수	34		

② 하수도

구 분	용수량(m ³ /일)	오·폐수 처리계획	비 고
계	512	-	
공장폐수	462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생활오수	26		
지하수량	24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258.0kg/일, 사업장 폐기물 42.37톤/일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① 전력

구 분	전력사용량(kW)	전력공급계획	비 고
전 력	1,49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② 통신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 고
통 신	73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여유율 : 30%

③ 에너지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 고
에너지	72,545	저유황경유 또는 LNG로 공급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은 2010.10월 설치 및 시공완료.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업체 가동 전 설치계획 임

8. 정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0,672,942	-	1,220,672,942	100.00		
도 시 지 역	42,582,840	-	42,582,840	3.48		
소 계	1,178,090,102	-	1,178,090,102	96.52		
관 리 지 역	계	223,746,462	-	223,746,462	18.32	
	관 리 지 역 (미세분)	-	-	-	-	
	계 획 관 리 지 역	100,924,318	-	100,924,318	8.27	
	생 산 관 리 지 역	27,570,708	-	27,570,708	2.25	
	보 전 관 리 지 역	95,251,436	-	95,251,436	7.80	
농 립 지 역	946,201,373	-	946,201,373	77.51		
자연환경보전지역	8,142,267	-	8,142,267	0.67		

2) 행정구역별(신동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9,703,095	-	119,703,095	100.0		
도 시 지 역	10,330,000	-	10,330,000	8.6		
소 계	109,373,095	-	109,373,095	91.4		
관 리 지 역	계	25,467,313	-	25,467,313	19.0	
	관 리 지 역 (미세분)	-	-	-	0.0	
	계 획 관 리 지 역	13,552,869	-	13,552,869	6.9	
	생 산 관 리 지 역	1,977,973	-	1,977,973	1.3	
	보 전 관 리 지 역	9,936,471	-	9,936,471	10.8	
농 립 지 역	81,972,782	-	81,972,782	70.7		
자연환경보전지역	1,933,000	-	1,933,000	1.6		

3)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7,260.8	-	107,260.8	
계 획 관 리 지 역	107,260.8	-	107,260.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㉔	예 미 농공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 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107,260. 8	-	107,260. 8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1)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중로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1,116	-	-	-		-	
소 계 (중로2류)						155	-	-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99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소 계 (중로3류)						961	-	-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900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901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651	-	651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지역

2) 공간 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711	-	4,711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87.5	-	187.5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3,890.1	-	3,890.1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나)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신동읍 예미리 859-3번지	2,246.7	-	2,246.7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 지	저류 시설	신동읍 천포리499-2, 예미리896-5번지	1,639.6	-	1,639.6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①	폐수종말 처 리 장	신동읍 예미리896-4, 천포리499-1	1,067	-	1,067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계획관 리 지 역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번 호		위 치	획 지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명 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07,260.8	107,260.8	계		-	107,260.8	107,260.8	
공장시설용지			75,634.4	73,194.4	공장시설용지		-	75,634.4	73,194.4	감)2,440.0
A	A1	공장용지	75,634.4	7,838.0	A1-1	-1	신동읍 예미리 893-1번지 일원	3,108.8	3,108.8	
		공장용지			A1-10	-2	신동읍 예미리 893-2번지 일원	4,729.2	4,729.2	
	A2	공장용지		10,861.6	A1-5	-1	신동읍 예미리 895-1번지 일원	3,276.5	3,276.5	
		공장용지			A1-6	-2	신동읍 예미리 895-4번지 일원	3,276.7	3,276.7	
		공장용지			A1-7	-3	신동읍 예미리 895-2번지 일원	4,308.4	4,308.4	
	A3	공장용지		15,329.7	A1-8	-1	신동읍 예미리 897-1번지 일원	6,555.7	6,555.7	
		공장용지			A1-9	-2	신동읍 천포리 500-2번지 일원	6,333.7	6,333.7	
		공장용지			A1-15	-3	신동읍 예미리 898-1번지 일원	2,440.3	2,440.3	
	A4	공장용지		6,349.1	A1-4	-1	신동읍 예미리 896-3번지 일원	6,349.1	6,349.1	
	A5	공장용지		12,629.6	A1-2	-1	신동읍 예미리 896-1번지 일원	5,981.3	5,981.3	
		공장용지			A1-3	-2	신동읍 예미리 896-2번지 일원	6,648.3	6,648.3	
	A6	공장용지		9,015.9	A1-11	-1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2,003.6	2,003.6	
		공장용지			A1-12	-2	신동읍 예미리 894-5번지 일원	2,003.7	2,003.7	
		공장용지			A1-13	-3	신동읍 예미리 894-6번지 일원	2,003.6	2,003.6	
		공장용지			A1-14	-4	신동읍 예미리 894-2번지 일원	3,005.0	3,005.0	
	A7	공장용지		11,170.5	A1-17	-1	신동읍 천포리 501-1번지 일원	4,094.5	4,094.5	
공장용지		A1-18	-2		신동읍 천포리 501-2번지 일원	7,076.0	7,076.0			
-	공장용지	-	A1-16	-	신동읍 예미리 898-3번지 일원	2,440.0	-	감)2,440.0		
공공시설용지			22,837.8	25,277.8	공공시설용지		-	22,837.8	25,277.8	증)2,440.0
B	B1	도 로	22,837.8	15,179.9	B1-1	-1	신동읍 예미리 899번지 일원	2,969.3	2,969.3	
		도 로			B1-2	-2	신동읍 예미리 900번지 일원	6,176.2	6,176.2	
		도 로			B1-3	-3	신동읍 천포리 502번지 일원	6,034.4	6,034.4	
	B2	주차장		651.0	B2-1	-1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일원	651.0	651.0	
	B3	소공원		2,246.7	B3-1	-1	신동읍 예미리 895-3번지 일원	2,246.7	2,246.7	
	B4	공동이용시설		2,053.6	B4-1	-1	신동읍 예미리 894-3번지 일원	2,053.6	2,053.6	
	B5	공동이용시설		2,440.0	-	-1	신동읍 예미리 898-3번지 일원	-	2,440.0	증)2,440.0
	B6	폐수종말처리장		1,067.0	B5-1	-1	신동읍 천포리 501-1번지 일원	1,067.0	1,067.0	
B7	오폐수저류지	1,639.6	B6-1	-1	신동읍 천포리 501-2번지 일원	1,639.6	1,639.6			
녹지용지			8,788.6	8,788.6	녹지용지		-	8,788.6	8,788.6	
C	C1	완충녹지	8,788.6	4,711.0	C1-1	-1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711.0	4,711.0	
		완충녹지		187.5	C1-2	-2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87.5	187.5	
		완충녹지		3,890.1	C1-3	-3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3,890.1	3,890.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1 ~ A1-18 (공장시설용지)	용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20 제1호 자목의 건축물(공장)
			불허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사업장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A1-1~A7-2 (공장시설용지)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사업장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4-1 (공동이용시설)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 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 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변경	B4-1, B5-1 (공동이용시설)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 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 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 : 별첨 1

10. 지형도면 고시

- 명 칭 : 정선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면 적 : 107,260.8m²
-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장 소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 기 간 : 2017. 08. 28. ~ 2017. 09. 10.(14일간)
- 열람시간 : 평일 09:00~18:00

[별첨 1]

정선 예미농공단지 [토지 및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계				107,260.8	107,260.8						
1	예미리	893-1	장	3,108.8	3,108.8	정선군					
2	예미리	893-2	장	4,729.2	4,729.2	정선군					
3	예미리	894-1	장	2,003.6	2,003.6	정선군					
4	예미리	894-2	장	3,005.0	3,005.0	정선군					
5	예미리	894-3	대	2,053.6	2,053.6	정선군					
6	예미리	894-4	차	651.0	651.0	정선군					
7	예미리	894-5	장	2,003.7	2,003.7	정선군					
8	예미리	894-6	장	2,003.6	2,003.6	정선군					
9	예미리	895-1	장	3,276.5	3,276.5	정선군					
10	예미리	895-2	장	4,308.4	4,308.4	정선군					
11	예미리	895-3	공	2,246.7	2,246.7	정선군					
12	예미리	895-4	장	3,276.7	3,276.7	정선군					
13	예미리	896-1	장	5,981.3	5,981.3	정선군					
14	예미리	896-2	장	6,648.3	6,648.3	정선군					
15	예미리	896-3	장	6,349.1	6,349.1	정선군					
16	예미리	896-4	잡	1,050.4	1,050.4	정선군					
17	예미리	896-5	유	324.3	324.3	정선군					
18	예미리	897-1	장	4,733.4	4,733.4	정선군					
19	예미리	897-2	장	94.9	94.9	정선군					
20	예미리	898-1	장	2,440.3	2,440.3	정선군					
21	예미리	898-2	장	1,063.1	1,063.1	정선군					
22	예미리	898-3	장	2,440.0	2,440.0	정선군					
23	예미리	899	도	2,247.2	2,247.2	정선군					
24	예미리	900	도	7,475.4	7,475.4	정선군					
25	예미리	901	도	1,858.3	1,858.3	정선군					
26	예미리	902	도	602.0	602.0	정선군					
27	예미리	903	공	3,481.5	3,481.5	정선군					
28	예미리	904	공	57.0	57.0	국(건설교통부)					
29	예미리	905	공	818.6	818.6	정선군					
30	예미리	906	공	1,002.5	1,002.5	정선군					
31	예미리	907	구	48.6	48.6	정선군					
32	예미리	908	구	342.4	342.4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권리자
33	예미리	909	구	11.5	11.5	정선군				
34	천포리	499-1	잡	16.6	16.6	정선군				
35	천포리	499-2	유	1,315.3	1,315.3	정선군				
36	천포리	499-3	공	187.5	187.5	정선군				
37	천포리	500-1	장	1,822.3	1,822.3	정선군				
38	천포리	500-2	장	6,238.8	6,238.8	정선군				
39	천포리	501-1	장	3,031.4	3,031.4	정선군				
40	천포리	501-2	장	7,076.0	7,076.0	정선군				
41	천포리	502	도	2,997.0	2,997.0	정선군				
42	천포리	503	공	390.9	390.9	정선군				
43	천포리	504	공	184.9	184.9	정선군				
44	천포리	505	공	24.9	24.9	정선군				
45	천포리	506	구	2,238.3	2,238.3	정선군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904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등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부단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 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의 원칙을 단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임원 및 단원의 교육 이수 의무시간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임 규정이 없음에 따라 조문삭제.

○ 임원 및 단원 : 2회 8시간

○ 단장 :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이수

(안 제13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정선군수 (안전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 안전건설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98), 팩스(033-560-2591)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조직) ① (생략)</p> <p>②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p>	<p>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한다) 제60조제3항에 의거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p>

③ ~ ⑧ (생 략)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생 략)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 10. (생 략)

③ · ④ (생 략)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제13조(교육) ① (생 략)

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감염병 -----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단원수는 300명이내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

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20~ 30명으로 한다.

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과약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정선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

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 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 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7-907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입법 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함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7조”를 “제126조”로 개정하고 반복적인 개정을 피하고자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개정함 (안 제2조)

다. 상위법에서 명시된 일반적인 내용을 삭제함 (안 제3조)

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함 (안 제6조)

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33-560-2490
- 팩 스 : 033-560-2596
- 이메일 : bybll0@korea.kr

조례 제 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제5조의 제목 “(용도)”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 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 -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p>
<p>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 관리한다.</p>	<p>② ----- ----- 도시계획 담당부서-----.</p>
<p>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연도에 따른다.</p>	<p><삭 제></p>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3. (생략)
-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생략)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및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 따른 -----
- 2.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
- 3. 그 밖에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

<p><u>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채 발행계획 을 수립할 때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준용) <u>특별회계의 예산편 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u></p>	<p><u>를 준용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준용) <u>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 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	---

정선군 공고 제2017-909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변경함

(안 제1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함 (안 제5조)

다. 중복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함

(안 제7조 ~ 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33-560-2490
- 팩 스 : 033-560-2596
- 이메일 : bybll0@korea.kr

조례 제 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 을 “정함”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 를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는 법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 를 각각 “관리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 를 “관리자”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간” 을 “공공기관”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을 “법령” 으로, “동” 을 “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	제1조(목적) ----- ----- ----- -----정함----- ----- ----- ----- ----- -----

로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 변화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도로의 개발
4. 읍·면별 연계성을 검토한 이용개선방안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 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군

-.

②관리자-----

-----.

③관리자-----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관리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 공공기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 법령-----

 ---- 그 -----

 -----.

②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17-912호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 식품접객업

▶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장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2017. 9. 2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2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위생팀
- 전 화 : 033-560-2010
- 팩 스 : 033-563-4000
- 이메일 : bhmom1998@korea.kr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 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축제(행사)장 및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역 또는 공사현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및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음식물 찌꺼기,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 사.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제3조 관련)

1.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4]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원재료

- 가.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조리식품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구용기

- 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제조가공에 사용된 기구류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한다.

4. 개인위생관리

- 가.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할 수 없다.

5. 주변환경

- 가.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 등 조건부 영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행사명(전통시장명)	계약(행사)기간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영업	영업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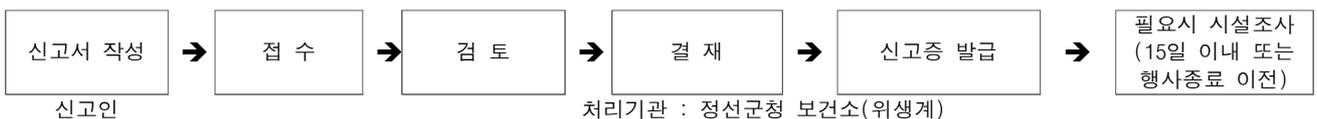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영 업 소 명 칭 :
- 소 재 지 :
- 영 업 기 간 :
- 영 업 의 종 류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소	종 류		업 소 명	
	소 재 지			
폐업일자		년 월 일		
폐업사유				
분실사유				
<p>「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규정에 의한 정선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위법 및 퇴폐·변태 행위)유지에 협조 할 것이며,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정선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의 무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7-921호

「정선군민제안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2017. 9. 6. ~ 2017. 9. 26.

4. 폐지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125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rbiyon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민제안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7-922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17.1.6.)에 따라 채택 심사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
-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등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운영하여 온 제안 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제안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의 채택 결정과 실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시상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제9조)
- 마.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폐지(안 부칙 제2조)

3. 입법예고기간: 2017. 9. 6. ~ 2017. 9. 26.

4. 전부개정 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125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rbiyon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70만원
-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제목	
실시가능성에 대한 의견	
창의성에 대한 의견	
법적타당성에 관한의견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	
계속성에 관한 의견	
기타의견 (효율성 및 효과성)	
채택여부	채택() 불채택()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표1]

심의위원 심사표

제 안 제 목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	다소있다	약간있다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	·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 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체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일부 소속기관	일부 해당부서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 기타 의견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인)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기준

점수	등급	비고
96점 이상	금상	
86 ~ 95점	은상	
76 ~ 85점	동상	
70 ~ 75점	장려상	
70점 미만	등급 부여하지 않음	